

감사결과처분요구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	2021	-	-	-	주의(2명)
제 목 : 용역발주에 따른 일상감사 누락					
1. 현황 1) ○○○○○ ○○○○○ ○○○은 2021년 4월에 ‘살기좋은 도시모델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채 4월○○일 용역 발주의뢰를 하여 4월○○일 ○○○○○로부터 계약체결을 통보받고 4월○○일에 용역 감독자 지정까지 마쳤다. 2) 4월○○일 ○○○은 감사실에 전화로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 2. 감사 결과 1) 관계규정 및 법령(판단 기준) 가. 일상감사는 우리 공사 『감사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시행세칙 제7조(일상감사의 범위)의 별표1에는 일상감사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3천만원 이상 일반·학술용역의 계약체결’을 포함하고 있다. 2) 위법부당 내용 ○○○○○ ○○○○○ ○○○은 ‘살기좋은 도시 추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4월 ‘살기좋은 도시모델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규정 제3조 제5항과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있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 ○○○은 이러한 결재과정에서 실무자의 업무추진내용을 자세히 확인·점검하지 않은 채 결재를 하여 결과적으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용역발주를 방조하였다. 3) 관계자 주장 및 판단 ○○○은 ‘일상감사 범위가 2021.2.1.일자로 기존의 1억이상 용역에서 3천만원이상 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 이후에 알게 되어 즉시 감사부에 후속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다’고 2021년 5월 ○○일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상감사는 공사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계약 이전에 점검·검토하여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계약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미 모든 계약사무가 종결된 업무에 대해 뒤늦게 후속 조치를 해달라는 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그러한 ○○○의 행위와 진술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요구내용

○○○과 ○○○가 ‘살기좋은 도시모델 시뮬레이션 검토 용역’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행위는 우리 공사 『감사규정』 제3조 제5항,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뚜렷이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 훈계 등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사유) 제1항에 따라 ○○○○○○과 ○○ ○○○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합니다.(주의.)

[관련자]

- ▶ ○○○○○○ ○○○○○○ ○○ ○○○ - 주의.
- ▶ ○○○○○○ ○○○○○○ ○○ ○○○ - 주의.